이감국어 모의고사

01
SEASON 2

예비평가 지문분석

[2024학년도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4~9] 인문 통합

노자의 사상과 『도덕경』에 대한 조선의 주석서들

＊ 지문 평가

(가)에서는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유가와 도가의 사상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조선의 주석서들이 지닌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각 유학자들의 사상과 도가에 대한 그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되, (나)는 특히 각 주석서들의 해석상의 차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동양 철학 – 유가, 도가

공자, 인의, 노자, 『도덕경』, 절인기의, 사, 주자

(나) 인문 – 동양 철학 – 주석서

주자학, 『도덕경』, 주석서, 이이, 『순언』, 박세당, 『신주도덕경』, 무위, 홍석주, 『정로』, 이충익, 『초원담로』, 소사과욕

＊ (가) 지문 분석

 # (가)문단1 : 공자의 유가 사상과 노자의 도가 사상

1)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에 직면하여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는 도(道)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인의(仁義)**를 강조하였다. 유가에서 인의는 도덕 실천의 규범이자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이치가 지닌 속성으로 이해된다.

⇒ '공자'는 당시의 사회 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의를 강조했다. 인의를 통해 '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도가의 뿌리인 (노자) 역시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의 회복을 말하였으나 도에 대한 이해가 유가와는 달랐다. 나아가 노자의 저서인 **『도덕경』** 19장에서 **'절인기의(絶仁棄義)'**, 즉 "인을 끊고 의를 버린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듯이, 노자는 인의의 강조를 오히려 혼란 극복의 걸림돌로 여겼다.

⇒ 반면 '노자'는 인의를 통해서는 '도'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오히려 혼란 극복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노자는 '도'를 무엇으로 이해했기에 인의를 부정적으로 봤는지, 또한 '도'의 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듯 항상 문단1에서는 지문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 문제 상황 : 사회 혼란
- 문제 원인 : 도(道)의 부재[→ 도(道)의 회복 필요]
- 공자의 해결 방안 : 인의(仁義)의 강조
- 노자의 해결 방안 : _____

 # (가)문단2 : '도'에 대한 유가와 도가의 견해

1) 도를 규범과 관련지으며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 신하의 도 등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유가와 달리, ……

⇒ '도'에 대한 유가의 견해다. 유가에 따르면 '도'는 지켜야 하는 바로서,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2) …… 『도덕경』에 따르면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도란 사람들의 인식은 물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규범이나 제도 등의 인위적인 것을 초월하여 세상의 근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자연의 운행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인간이 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일체의 인위를 배제하고 어떠한 목적성도 없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번에는 '도'에 대한 도가의 견해다. 동일한 개념에 대한 두 사상의 상반된 견해가 서술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자.

	유가	도가
도(道)	규범	규범을 초월한 것
도의 표현	구분하여 표현 가능	구분하여 표현 불가능

3) 이러한 관점에서 인의의 강조는 거짓된 선(善)으로 이어지기 쉽고 본성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기 쉽다.

⇒ 유가에서 '도'는 규범과 관련된 것, 즉 따라야 하는 무언가다. 그래서 '도'를 회복하려면 '도덕 실천의 규범'인 인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문단1-1)].

⇒ 반면 도가에서는 오히려 '도'를 규범 따위를 초월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인의의 강조'는 곧 '규범을 초월한 것[→ '도']을 규범으로 회복하려는 일'이 되므로, 인의와 같은 규범으로 '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문단3 : 사회 혼란의 원인에 대한 유가와 도가의 견해

1) 유가는 하늘의 이치와 대립되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인 **사(私)**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즉 사사로움은 인의라는 보편적 윤리 규범의 강조로 제거되어야 할 개체의 욕망인 것이다.

⇒ 유가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사'에 있다고 보았다. '사'는 하늘의 이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유가에 따르면 인의는 하늘의 이치가 지닌 속성이므로[문단1-1)], 인의를 통해 '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문제 상황 : 사회 혼란
- 문제 원인 : 사(私)의 존재[→ 도(道)의 부재]
- 공자의 해결 방안 : 인의(仁義)의 강조 ⇨ 사(私)의 제거

2) 이와 달리 『도덕경』에 따르면 사욕은 가급적 줄여야 할 개체의 욕망일 뿐으로, 자연적인 본성으로서의 욕망 그 자체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 반면 도가에 따르면 '사'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에 대한 두 사상의 견해가 다르므로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자.

	유가	도가
사(私)	제거해야 하는 대상	절제해야 하는 대상

3) 혼란의 원인은 각종 제도와 규범이 부정의 도구로 악용됨에 있으므로, 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그저 자연 앞에서 겸허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도가에 따르면 오히려 인의를 비롯한 규범이나 제도 등의 '인위'를 악용하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다[문단2-2)]. 노자는 이러한 인위를 배제하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본 것이다.

[맥락 짚기] 지문을 읽을 때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해결 방안도 달리 도출되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 사회 혼란
- 문제 원인 : 제도와 규범의 악용[→ 도(道)의 부재]
- 노자의 해결 방안 : 겸허함을 갖추는 것[→ 자연의 이치에 순응]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주목] 노자가 '인의의 강조'를 혼란 극복의 걸림돌로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문단1-2)]. 이는 오히려 제도와 규범을 강조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문단4 : 노자의 사상에 대한 주자의 견해

1) 유가 사상을 집대성한 송나라의 주자는 노자의 사상에 대해 다분히 유가적 입장으로만 이해하면서도, 도가에서 제시하는, 본성을 회복하려는 수양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 '주자'는 적어도 '수양'의 가치에 있어서는 도가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본성을 회복하려는 수양'은 곧 노자의 해결 방안과 직결되는 것으로[문단3-3)],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는 수양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2) 다만 노자의 사상 전반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비판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허에 빠지도록 하여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실질적인 답을 주기 힘든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노자는 '인위의 배제'를 강조하는데, 이는 곧 인의를 비롯하여 모든 제도나 규범 등의 배제를 내세우는 것이다[문단2-2)].
   ⇒ 인의를 강조하는 유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이 실제로 사회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공허한 주장으로만 느껴질 것이다.

*** (나) 지문 분석**

 # (나)문단1 : 『도덕경』에 대한 조선의 주석서

1)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에서 『도덕경』에 대한 해설을 담은 주석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도가 사상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은 (나)를 읽는 시점에서 (가)를 온전히 이해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가)를 토대로 하여 (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자학'에서는 인의를 부정하는 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했다[(가)의 문단4-2)]. 따라서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도 도가 사상이 담긴 『도덕경』에 대한 주석서가 드물었다는 내용이다.
2) 양대 전란을 전후로 한 16세기부터 조선에서 발간된 『도덕경』의 주석서가 등장하였는데, 주석가의 학문적 배경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목적과 해석 체계가 각기 달라서, 이 주석서들을 그저 획일적으로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도덕경』의 주석서 중에는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도 있지만, 한편으로 '유가 사상에서 벗어나는 해석'도 있다는 맥락이다.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 (나)문단2 : 이이의 주석서

1) 이이는 『도덕경』에서 유가적 입장에 가까운 것만을 발췌하여 해석한 『순언』을 편찬하였다. '절인기의'와 같은 부분은 배제되고 절제나 마음 비움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
   ⇒ '이이'의 주석서 『순언』은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에 해당한다. 애초에 도가 사상 중에서 유가적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인의의 강조'에 어긋나는 내용[→ 절인기의]은 배제되었으며 '절제, 마음 비움'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성을 회복하려는 수양' 정도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가)의 문단4-1)].
2) …… 여기에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고자 하는 도가적 수양이 당쟁의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도가 사상에 대한 주자의 비판을 떠올리자. 주자는 도가 사상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가)의 문단4-2)].
   ⇒ 이이 역시 주자학의 입장에서 당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주석서를 편찬했다.
   ⇒ 여기서 도가적 수양을 '사사로움을 제거하고자 함'으로 풀이한 것 역시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이다. 사욕을 제거의 대상으로 본 것은 유가 사상이지, 도가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가)의 문단3].

 # (나)문단3 : 박세당과 홍석주의 주석서

1) 박세당과 홍석주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노자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 '박세당', '홍석주'는 유가 사상에 어긋나는 도가 사상에 대해서도 다루되,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이이	박세당, 홍석주
유가 사상에 부합하는 도가 사상만을 다룸	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함.

2) 『도덕경』의 주석서인 『신주도덕경』을 통해 박세당은 인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인 무위(無爲)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자의 인의 부정을 근원적으로 모순이 있는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집권 세력이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보고 도가 사상에서 긍정성을 찾아 제시하되 유가의 근본 입장마저 흔드는 것은 피하고자 하였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유가 사상에서는 인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의를 부정'하는 노자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 다만 '무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를 통해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당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목] 여기에서 '무위'는 '일체의 인위를 배제하고 어떠한 목적성도 없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다[(가)의 문단2-2)].
3) 홍석주 역시 『정로』에서 『도덕경』 19장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유가와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양측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해석에는 인의의 절대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홍석주 역시 도가 사상을 다루면서도 '인의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인의를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기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만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가)의 문단3-1)].

 # (나)문단4 : 이충익의 주석서

1) 이와 달리 이충익은 『초원담로』를 통해 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였다. 그는 노자가 거짓된 인의와 참된 인의를 구분하였고, '절인기의'는 그저 이름으로만 남은 거짓된 인의를 버리라는 표현일 뿐 인의의 실천을 배척하려는 취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맥락 짚기] 지금까지는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만이 제시되었다면, 처음으로 '유가 사상에서 벗어나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특히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 앞서 이이는 인의를 강조하는 유가 사상에 따라 '절인기의'를 배제했다[문단2-1)].
   ⇒ 반면 '이충익'은 '절인기의'를 배제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달리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해석한다. 즉 노자는 '거짓된 인의'에 한하여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참된 인의'까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 이충익은 이렇게 노자를 해석하며 유가적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기도 하였다. 그는 인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사와 욕심을 줄이는 **소사과욕(少私寡欲)**을 따를 때에 인의가 저절로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노자의 의도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 '인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거짓된 인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소과사욕'은 '참된 인의'에 부합한다. 여기서 '소사과욕'은 사욕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유가의 기본적인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가)의 문단3-2)].

[주목] 이렇듯 이충익의 주석서는 사욕을 '제거'가 아닌 '절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가에서 제법 벗어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문단5 : 이충익의 주석서가 지닌 의의

1) 이충익의 해석은 인의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인위적인 규범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적인 도덕률로 받아들이려는 근대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그는 주자학적 명분론에 치우친 당시의 풍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 즉 이충익은 인의를 여전히 강조하되, 인의가 '이름만을 내세우는 것[→ 인위적인 규범, 거짓된 인의, 주자학적 명분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도가 사상'의 개념들을 끌어 들여 보이려 한 것이다.

2) 이는 사사로움이란 곧 인의와 같은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제거되어야 할 인욕이라고 본 박세당이나 홍석주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 이때 이충익이 동원한 '소사과욕'은 사사로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는 사사로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유가 사상의 입장과 대비된다[(가)의 문단3-2)].

3) 서명응은 『도덕지귀』를 통해 하늘의 이치인 인의로써 개체의 사사로움을 제거하려는 것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갓난아이의 마음인 겸허함을 갖추었느냐의 여부가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사(無私)의 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도를 잃지 않으면 인의는 저절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사(無私)의 도'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허함'이다.

[주목] 이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욕의 제거' 대신에 '겸허함'을 내세운 도가 사상과 부합한다[(가)의 문단3-3)].

- 문제 상황 : 사회 혼란
- 문제 원인 : 제도와 규범의 악용[→ 도(道)의 부재]
- 노자의 해결 방안 : 겸허함을 갖추는 것[→ 자연의 이치에 순응]

∴ 서명응은 해결 방안으로 '사사로움의 제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학자들의 입장과는 구분된다[(가)의 문단3-1)]. 서명응은 오히려 '겸허함'을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사사로움의 개념을 유가가 아닌 도가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에 해당한다[(가)의 문단3-3)]. 도가에서는 사사로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인의의 강조'도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보기> 분석**

 # <보기>문단

1) 서명응은 『도덕경』에 대한 자신의 주석서인 **『도덕지귀』**를 통해 노자의 본의가 인의를 버리는 데에 있지 않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맥락 짚기] 지문에서 '이이, 박세당, 홍석주, 이충익'의 주석서를 살펴보았다면 <보기>에서는 새로운 주석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주석서가 지문의 주석서 중 무엇과 가장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지문의 주석서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서명응'은 그의 주석서에서 인의를 부정적으로 본 노자의 본의를 따졌는데, 이는 이충익의 주석서와 흡사하다[(나)의 문단4-1)].

2) 그는 인의를 『도덕경』의 본말론(本末論)으로 해석하여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처세의 관점에서 재수용하였다. 즉, 인의는 근본인 도가 발현된 말단으로, 갓난아이의 마음과 같은 무사(無私)의 도를 잃지 않는다면 저절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면한 혼란의 극복을 위해 굳이 인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 서명응에 따르면 인의는 '도'가 발현된 것으로, 따라서 '도'를 잃지 않으면 저절로 유지된다. 인의의 실천을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의의 실천이 꼭 강조될 필요까지도 없는 것이다.

⇒ 이렇듯 사회 혼란의 해결을 위해 꼭 인의를 강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노자는 인의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서명응의 주장이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기술

머신 비전에 의한 불량 검사

*** 지문 평가**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전통적인 불량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 러닝 모델'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dSVDD 모델'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공학 – 머신 비전
머신 비전, 머신 러닝 모델, 레이블링, 이미지 분석, 학습, 경계 영역, 디프러닝 서포트 벡터(dSVDD) 모델, 목적 함수, 매핑

*** 지문 분석**

 # 문단1 : 머신 비전을 통한 불량 검사

1)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별하던 작업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대신해 주는 시스템을 **머신 비전**이라 한다. 이는 제조 공정에서 얻은 이미지를 토대로 불량품을 선별하는 검사에 사용된다. 머신 비전에 의한 전통적인 불량 검사는 결함의 종류, 크기, 위치 등 양품과 구별되는 불량품의 특성들과 기준을 일일이 명시한 규칙에 따른다.

⇒ 불량 검사는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검사로, 사람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 '빠르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의 눈 대신에 기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리켜 '머신 비전'이라고 한다.

⇒ 머신 비전에 의한 전통적인 불량 검사는 사람이 불량품의 특성들과 기준을 하나하나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2) 다만 이 방식은 규칙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쉽지 않고 번번이 불량을 놓치는 문제를 지닌다.

⇒ 전통적인 불량 검사에서는 그러한 규칙들을 제대로 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일일이 명시한 규칙'에만 의존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불량품의 특성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시스템은 불량품을 양품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맥락 짚기]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을 식별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문제 원인을 극복해 내는 것이 곧 해결 방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 규칙 구성의 어려움, 오류 가능성↑
- 문제 원인 : 일일이 명시한 규칙에만 따름

3)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학습하여 구성한 **머신 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머신 비전이 등장했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머신 러닝 모델'은 전통적인 불량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해당하므로, 앞선 문제 원인이 '학습'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 지문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문단2 :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 (1)

1)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에는 다량의 학습 이미지가 필요하다. 양품과 불량품 이미지가 각각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며, 각 이미지들은 레이블링을 거쳐야 한다. **레이블링**은 사람이 직접 학습 이미지를 보고 판별하여 불량 유무의 정답을 표시해 두는 것을 말한다.

[맥락 짚기]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레이블링'은 머신 러닝 모델 학습의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머신 러닝 모델은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는데[문단1-3)], 그것에 필요한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불량 유무의 정답을 표시하는 과정이 곧 레이블링이기 때문이다.

⇒ 쉽게 말해서, '양품'이라고 표시된 이미지 100만 장, '불량품'이라고 표시된 이미지 100만 장을 확보해 두는 과정이다.

2) 레이블링 후에는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이미지 분석을 거친다. **이미지 분석**은 제품의 특성들에 대한 수치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길이, 직선의 수, 무늬의 개수 등 수많은 특성이 활용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만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미지 분석 직후에 개별 제품은 <그림>과 같이 두 특성의 값을 X와 Y로 삼는 평면에서 양품일 때 흰 점, 불량품일 때 검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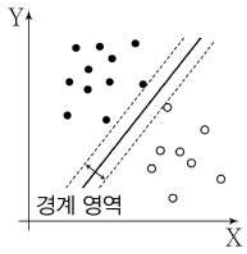

<그림>

⇒ 두 번째 단계는 '이미지 분석'으로, 제품의 특성들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제품의 특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불량 검사와 비슷하다[문단1-1)].

[주목] 다만 전통적인 불량 검사에서는 특성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을 떠올렸어야 한다. 가령 전통적인 불량 검사에서는 '크기가 1cm보다 크면 불량품이다.'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길이'가 몇 cm인지만을 분석하는 것이지, 길이가 얼마나 될 때 불량품인지를 정하지는 않는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특성만을 대상으로 '이미지 분석'을 한 결과를 평면에 표현한다면 <그림>과 같다. '레이블링'에 의해 각각의 이미지들이 양품, 불량품 중 무엇에 대응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흰 점과 검은 점으로 구분해 찍을 수 있다.

 # 문단3 :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 (2)

1) **학습**은 <그림>과 같은 평면에 양품과 불량품을 가르는 무작위의 직선을 상정한 후 점이 추가될 때마다 그것이 최적의 경계선이 되도록 경계선을 규정하는 변숫값을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이다.

⇒ 세 번째 단계는 '학습'이다. 이는 '무작위의 직선'을 조금씩 수정하여 '최적의 경계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가령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직선을 그었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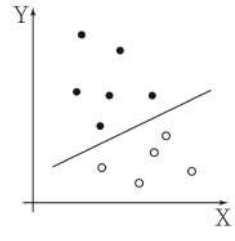

⇒ '점이 추가'된다는 것은 양품, 불량품 중 하나의 점이 평면에 추가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점이 왼쪽 그림과 같은 위치에 추가된다면 직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 '학습'은 이런 식의 조정을 거듭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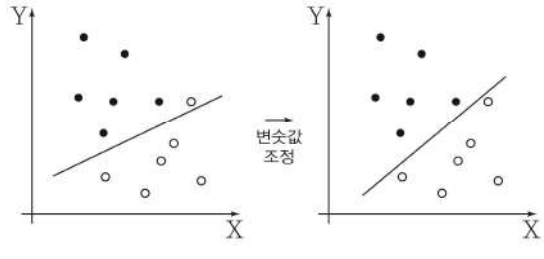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그래서 머신 러닝 모델에서는 '다량의 학습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지가 많을수록 점들이 더 많이 추가되고, 그에 따라 더욱 최적인 직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 결국 '학습'은 일일이 규칙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스템 스스로가 일종의 포괄적인 '규칙'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일일이 규칙을 명시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전통적인 불량 검사'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문제 상황 : 규칙 구성의 어려움, 오류 가능성↑
- 문제 원인 : 일일이 명시한 규칙에만 따름
- 해결 방안 : 머신 러닝 모델[→ 학습을 통한 최적의 경계선 도출]
  ⇨ 규칙을 일일이 명시할 필요가 없음

2) <그림>에서처럼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흰 점까지의 거리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검은 점까지의 거리의 합인 **'경계 영역'**이 가능한 한 커지도록 경계선이 정해진 모델이 오류 가능성이 낮은 좋은 모델이다.

⇒ '경계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문단2의 <그림>을 다시 참고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 영역 =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흰 점까지의 거리
+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검은 점까지의 거리

⇒ 경계 영역이 클수록 경계선에 의해 흰 점과 검은 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즉 불량품과 양품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그럴수록 오류 가능성[→ 불량품을 양품으로,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최적의 경계선을 찾는 것은 곧 현 상태에서 경계 영역이 가장 큰 경계선을 찾는 것과 같다.

경계 영역↑ ⇨ 오류 가능성↓

3) 학습을 거쳐 품질 좋은 머신 러닝 모델[→ 경계 영역이 넓은 모델]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여 제조 현장에서 실제 제품을 대상으로 불량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학습을 마친 머신 러닝 모델은 실제 불량 검사에 활용한다. 실제 제품은 '레이블링'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령 다음 그림의 '△'로 표기한 실제 제품은 경계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므로 불량품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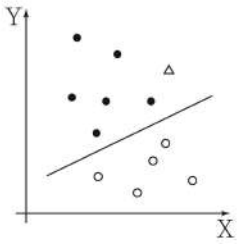

 # 문단4 : 머신 러닝 모델의 한계와 dSVDD 모델

1) 그런데 근래에는 수만 개의 양품이 생산되는 동안 1~2개의 불량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할 불량품 이미지를 충분히 얻기 힘들다. 또한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반드시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 머신 러닝 모델은 다량의 학습 이미지, 즉 일정량 이상의 양품 이미지와 불량품 이미지가 각각 필요하다[문단2-1)]. 그래야만 '학습' 단계에서 점이 추가될 때마다 경계선을 규정하는 변숫값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3-1)].

⇒ 그런데 오늘날에는 불량품이 덜 생산되는 만큼 불량품 이미지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

⇒ 또한 학습 단계에서 '경계선'은 직선으로 표현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직선으로 경계선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다음의 경우에는 곡선으로만 경계선을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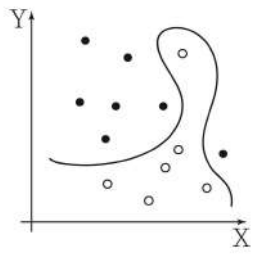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전통적인 불량 검사의 해결 방안인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해당 모델의 한계로 전환되고 있다. 머신 러닝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학습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

- 문제 상황 : 학습 수행의 어려움
- 문제 원인 : 불량품 이미지 개수↓, 직선의 한계

2) 이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디프 러닝 서포트 벡터(dSVDD)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dSVDD 모델'이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제 원인을 극복해 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문단5 : dSVDD 모델의 학습 (1)

1) dSVDD 모델은 <그림>의 점들을 새로운 평면의 점들로 매핑하는 **'목적 함수'**를 상정한다. **매핑**이란 X와 Y를 새로운 것으로 설정하여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 dSVDD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매핑'이다. '목적 함수'를 통해 평면의 점들을 새로운 평면에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2) 이 함수는 양품의 점들을 가급적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목적을 띤다. 즉 새 평면에서 양품의 점들을 모두 둘러싸는 가급적 작은 원을 경계선으로 삼아 원 밖의 점들을 불량품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다.

⇒ 머신 러닝 모델의 경우 불량품 이미지가 양품 이미지만큼 많이 필요하다[문단2-1)]. 그래야만 불량품과 양품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dSVDD 모델은 관점을 달리하여, 매핑을 통해 특정 원 안에 양품의 점들이 전부 모이게 만든다. 그렇다면 원을 경계선으로 삼아 원 밖에 놓이는 모든 점들은 불량품으로 취급하면 된다. 학습을 위해 불량품 이미지를 다량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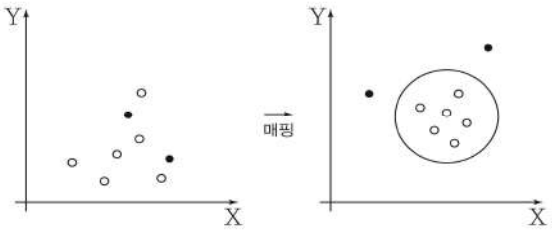

⇒ 또한 '직선'으로는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할 경계선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머신 러닝 모델의 한계도[문단4-1)], dSVDD 모델 방식에 따라 매핑을 거쳐 경계선을 '원'으로 표현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맥락 짚기] 즉 dSVDD 모델은 '매핑'과 '직선이 아닌 경계선'을 통해 머신 러닝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다.

- 문제 상황 : 학습 수행의 어려움
- 문제 원인 : 불량품 이미지 개수↓, 직선의 한계
- 해결 방안 : dSVDD 모델[→ 매핑 후 학습을 통한 조정]

3) dSVDD 모델을 얻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이미지가 추가될 때마다[→ 점이 추가될 때마다] 목적 함수의 가중치나 새로운 평면에서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조정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앞선 머신 러닝 모델은 최적의 경계선을 규정하기 위해 '변숫값'을 조정했다면[문단3-1)], dSVDD 모델은 '목적 함수의 가중치'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조정한다. 즉 새로운 점이 추가될 때마다 양품의 점들이 모두 작은 원 안에 모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주목] 이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 조정이 매핑을 거친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목적 함수의 가중치' 조정은 결국 매핑을 새로 수행하는 셈임을 잘 구분하자. 가중치가 조정되면 각 점들이 부여받는 값도 달라지므로 평면에서의 위치도 전부 달라진다.

 # 문단6 : dSVDD 모델의 학습 (2)

1) 다만 목적 함수의 가중치와 반지름의 척도가 서로 달라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습 구간을 여럿으로 나누고 다음의 두 가지 학습 방식을 엇갈려서 구간마다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 그런데 가중치와 반지름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습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조정할 것을 달리해야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령 학습 이미지를 100개 학습하는 경우 학습 이미지 1~10까지는 '학습 구간 1', 학습 이미지 11~20까지는 '학습 구간 2'와 같이 학습 구간을 10개씩 나눌 수 있다.

2) 추가된 학습 이미지의 정답이 양품일 때 특정 구간에서는 원을 고정한 채 기존의 흰 점을 포함하여 양품의 점들이 원의 중심에 가까워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고, ……

⇒ 학습 구간 1에서는 '가중치'를 조정하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고정한다.

3) …… 다음 구간에서는 가중치를 고정한 채 새로운 원의 중심을 찾으며 반지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 그다음 학습 구간 2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조정하고 '가중치'를 고정한다. 이렇게 구간마다 조정하는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주목] 가중치의 조정은 '양품의 점들이 원의 중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의 조정은 '반지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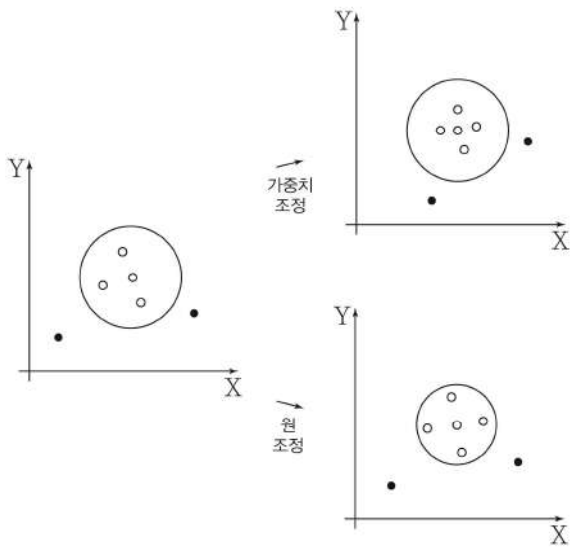

4) 어떤 구간이든 추가된 학습 이미지의 정답이 불량품일 때에는 검은 점들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다.

⇒ 양품의 학습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에는 학습 구간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원을 조정할 수도 있다. 반면 불량품의 학습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에는 오로지 가중치의 조정만이 이루어진다.

양품 이미지 추가	불량품 이미지 추가
학습 구간에 따라 가중치 조정 또는 원 조정	가중치 조정

⇒ 불량품 이미지 추가 시에 이루어지는 가중치 조정은 검은 점이 원의 중심에서 가급적 멀어지도록 하는 조정이다. 양품과 불량품 이미지 추가 시 이루어지는 가중치 조정을 구분해서 이해하자.

5) 불량품 이미지로 인해 경계 영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나, 수만 개의 양품 이미지들로 학습이 진행되므로 경계 영역이 충분히 큰 모델[→ 오류 가능성이 낮은 모델]을 얻을 수 있다.

⇒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양품의 점들이 작은 원 안에 모일 수 있도록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품 이미지들만 충분히 많은 경우에도 오류 가능성이 낮은 모델을 얻을 수 있다.

*** <보기> 분석**

 # <보기>문단

1) 핸드폰 케이스의 제조 현장에서 활용할 dSVDD 모델을 만들려 한다. 여기서는 불량 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로 길이'와 '모서리 곡률'의 두 가지 특성만을 활용한다. 학습 이미지를 수만 개 확보한 후 레이블링과 이미지 분석을 거쳐 학습을 시작했다.

[맥락 짚기] 불량 검사를 하려면 일단 dSVDD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문단5와 문단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자.

⇒ 레이블링과 이미지 분석을 거쳤다면, '양품 이미지'는 수만 개에 이르겠지만 근래에는 불량품 생산이 줄어든 관계로 '불량품 이미지'는 많지 않을 수 있다.

⇒ dSVDD 모델의 경우 각 이미지가 추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문단6-4)].

양품 이미지 추가	불량품 이미지 추가
학습 구간에 따라 가중치 조정 또는 원 조정	가중치 조정

2) 다음의 ⓐ, ⓑ는 동일한 학습 구간의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목적 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평면이다. 목적 함수의 가중치는 W, 반지름은 R, 원의 중심은 c로 칭한다. ⓐ와 ⓑ에서의 c와 R은 동일하며, 찍혀 있는 점들 중 겹쳐 있는 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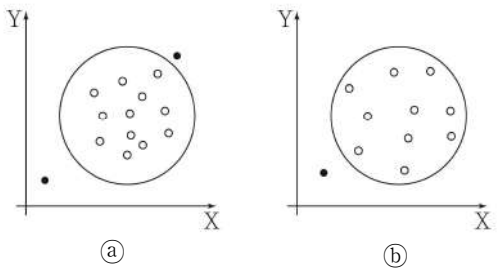

⇒ ⓐ, ⓑ의 학습 구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양품 이미지가 추가되면 둘 다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원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불량품 이미지가 추가된다면 반드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다.

⇒ 이때 c와 R이 동일하다는 것은 원의 조정이 아닌 가중치의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에 비해 ⓐ를 이루는 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불량품의 점이 ⓐ가 ⓑ보다 하나 더 많으며, 원 안의 양품의 점들도 ⓐ가 더 많다.], ⓑ 이후에 점들이 추가될 때마다 가중치가 조정된 결과가 곧 ⓐ임을 알 수 있다.

∴ 학습 과정에서 양품의 점이 추가될 때 가중치가 조정되면 양품의 점들이 원의 중심에 가까워진다[문단6-2)]. 즉 ⓑ에 비해 ⓐ의 흰 점들[→ 양품의 점들]이 원의 중심에 더 가까워진 것이 된다. 따라서 ②번 선지가 적절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사회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지문 평가**

법학 지문임에도 특이하게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지문이며, 문단3에 정보량이 몰려 있으므로 해당 문단을 특히 주의하여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플랫폼 노동, 근로기준법

플랫폼 노동,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사용종속성, 종속 노동성, 전속성, 독립 사용자성, 2018년 대법원, 2022년의 법 개정

*** 지문 분석**

 # 문단1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부여 문제

1)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방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인 **플랫폼**의 중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음식 주문 플랫폼에서의 배달 노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플랫폼 노동'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노무 제공'은 자신을 고용한 이[→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중개를 받을 뿐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되는 것이다.

[맥락 짚기] 사례로 주어진 플랫폼 배달 노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첫 문단에서 등장하는 예시는 지문 내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쟁점이다.

⇒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이 부여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 문단2 :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1)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은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이 같은 법리는 유사한 성격을 띠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이다.

⇒ 플랫폼 노동자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항상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때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사용 종속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용 종속성에 대한 판단 징표들 중에서 종속 노동성과 전속성이 높을수록, 독립 사용자성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맥락 짚기]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지면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각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속 노동성↑, 전속성↑, 독립 사용자성↓ ⇨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 주어진 요건들 간의 관계를 날카롭게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요령이다. 핵심은 사용 종속성의 판단이 모든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립 사용자성이 높더라도 종속 노동성이나 전속성이 매우 높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종속 노동성**은 사용자가 복무규정, 근무 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다면 종속 노동성이 높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4) …… **전속성**은 단일 사업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배달 기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중개를 받는다면 전속성이 높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5) **독립 사용자성**은 노동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이윤을 위해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으므로, 독립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해지는지[→ 즉 어떤 경우에 독립 사용자성이 낮아지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가령 배달 기사가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거나, 손실 발생의 위험을 배달 기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독립 사용자성은 낮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 문단3 :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적용 여부

1) 2018년 대법원은 배달 중 산업 재해를 입은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

⇒ 구체적인 판례가 주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문단1-2)]. 2018년 대법원은 문단2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했을 것이다.

종속 노동성↑, 전속성↑, 독립 사용자성↓ ⇨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근로자성을 부인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자가 플랫폼에서의 배달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으며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 2018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노무 제공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종속 노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문단2-3)].

3)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배달 플랫폼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없어서 노동자의 위치와 배송 상황 등 과정이 관리될 수 없었고 ……

⇒ 이 역시 플랫폼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종속 노동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

4) …… 배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 플랫폼 노동자 역시 '배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했는데, 이는 손실 발생의 위험을 노동자가 함께 부담했다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독립 사용자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문단2-5)].

⇒ 이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해당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속 노동성↓, 전속성 ?, 독립 사용자성↑ ⇨ 근로자성 인정 ×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맥락 짚기] '전속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략된 부분은 지문에서 마저 다뤄지거나 혹은 <보기>에서 다뤄질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야 한다.

5) 다만 당시 산재보험법은 9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 전속성을 충족하면서 제삼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 사용자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자성 인정과 별개로 산재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배달 플랫폼 노동자도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에서 이를 부인한 부분은 파기됐다.

⇒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문단2-1)],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일부 직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례 조항에 의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 제삼자 고용 × ⇨ 특례 조항 ○ ⇨ 산재 적용 ○

⇒ 그러나 원심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마도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유사하기는 해도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결과일 것이다.

⇒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플랫폼 노동자도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문단4 : 2022년 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1) 이후 **2022년의 법 개정**에서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 제공자**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권리 인정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성의 인정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 이후 법 개정에 의해 유사한 성격이었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명칭은 '노무 제공자'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산재보험법의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문단3-5)].

⇒ 또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낮아도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 다만 특례 조항은 어디까지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일각의 노동법 전문가**들은 플랫폼에서의 노무 제공은 과정 관리가 아니라 목표 관리에 중점을 둔 근로 조직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시스템에서 수행 목표가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그 목표의 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것에 상응해 차등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제를 받으며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플랫폼에서의 노무 제공이 과정 관리가 아니라 목표 관리임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종속 노동성].

⇒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을 '과정 관리'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근로자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문단3-3)]. 그런데 이를 '목표 관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수행 목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기> 분석**

 # <보기>문단1

(가) 갑은 의류업체와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이다. 업체는 매장의 일반 관리 지침,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갑에게 하달했으며, 갑은 휴가로 근무할 수 없을 때에 자기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쓰기도 했다. 법원은 갑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맥락 짚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단3의 '2018년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각 사례를 판단해 보자.

종속 노동성↑, 전속성↑, 독립 사용자성↓ ⇨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 갑은 의류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즉 의류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지만 백화점에서 자영업자처럼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갑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 갑이 의류업체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종속 노동성이 높다는 뜻이다[문단2-3)]. 한편 갑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도 하는데, 이는 독립 사용자성이 높다는 뜻이다.

[주목] 이렇게 독립 사용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갑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이는 종속 노동성이 높다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보기>문단2

(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 여러 곳에서 중개를 받아 직접 노무를 제공하던 을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을의 업무는 대체로 위치 추적 기능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업무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이 졌다. 을의 업무는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이었음에도 을의 산업 재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만약 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신청도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문단1-2)]. 그런데 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을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특례 조항까지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 을은 '위치 추적 기능'에 의해 플랫폼의 관리하에 놓였으므로, 을의 종속 노동성은 높았다[문단3-3)]. 하지만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를 받은 만큼 전속성이 낮았으며[문단2-4)], 손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으므로 독립 사용자성도 높았다[문단2-5)]. 그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 또한 비록 제삼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속성이 낮았기 때문에 특례 조항도 적용받지 못했다[문단3-5)].

을 : 전속성↓, 제삼자 고용 × ⇨ 특례 조항 × ⇨ 산재 적용 ×

∴ '2022년의 법 개정'에 의해 플랫폼 노동자는 '노무 제공자'로 분류되었으며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나)의 사례에 개정된 특례 조항을 적용한다면 전속성이 낮은 을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7] 시나리오-현대소설

(가)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수록 지문 평가**

대하소설 「토지」의 제1부를 각색한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분으로, 원작 소설의 인물 설정이나 사건을 크게 변형하지 않은 서사를 보여 준다. 흉년이라는 상황과 인물의 심리 및 인물 간 관계 양상이 영상으로 구현되기 위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며 지문을 읽도록 한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가족이 모두 죽고 최 참판가에 어린 서희만 남자, 서울에서 내려와 참판가에 눌러앉은 친척 조준구는 하인 삼수를 앞세워 전횡을 휘두르며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S#159. 흉년

(F. I.)[→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것] 폭양(曝陽, 뜨겁게 내리쬐는 볕을 쬠. 또는 그 볕) 밑에서 쩍쩍 거북 등처럼 갈라진 땅. 서너 뼘이나 자랐던 보리가 푸른 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메말라 있다.

– 기우제

– 익지도 않은 밤알만 한 복숭아를 따 먹는 아이들

– 길을 헤매고 있는 일가족 떼거지

– 최 참판가의 고방(庫房, 광. 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 앞. 마을 사람들이 기민미[→ 흉년이 들어 굶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곡식]를 받아 가고 있다.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우쭐대는 삼수가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런 삼수에게 굽실거리는 마을 사람들.

⇒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들을 짧게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편집하는 몽타주 기법으로 구성된 화면이다. 이를 통해 가뭄으로 흉년이 든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 주지 않아도, 흉년의 상황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표정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 인물 간 관계 등이 표현된다. 사람들에게 기민미를 나눠 주면서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우쭐'대는 삼수는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레이션 : 1903년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보리 흉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기우제는 아무 영험도 없이 보리농사를 완전히 망쳐 놓은 뒤에야 비는 내렸고 논은 나날이 푸르러 갔지만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떼거지가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아다니고 인심은 흉흉했다. 관에서 내온 기민 곡식은 새 발의 피였다. 고방에 곡식을 썩히던 천석지기, 만석지기들은 할 수 없이 기민미를 내기로 했다.

⇒ 앞서의 장면들이 화면에 제시될 때 삽입되는 내레이션으로, 화면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부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메마른 보리가 제시되는 장면에서 '1903년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보리 흉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라는 내레이션이 흐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에서 '기우제는 아무 영험도 없이'라는 내레이션이 흐르는 식으로 진행된다.

⇒ S#159는 다른 장면들과 달리, 특정한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담고 있지 않으며, 여러 장면을 편집한 화면과 내레이션을 통해 장면 제목인 '흉년'을 표현하고 있다.

S#160. 우물가

야무네와 막달네가 시래기나물을 헹구고 앉아서 잡담이다. 그 옆을 지나가는 봉기.

봉기 : 어흠.

막달네 : 오만 사람이 다 굶어 죽는다 카는데 저놈[→ 봉기]네 집구석에는 쌀밥만 묵더라.

야무네 : 쌀밥을?

막달네 : 삼수 놈 말고 어느 놈 덕분이겄나.

야무네 : 하늘이 안 무섭든가?

막달네 : 저 목이 뿌러져 죽을 놈이 앰한 소리를 해도 유만부득(類萬不得, 여러 가지로 많다 하여도 그것을 얻거나 취할 수는 없음)이제. 삼수하고 나하고 우째?[→ 억울한 소문을 퍼뜨린 봉기에 대한 원망] 지 딸년을 삼수한테 내주었음 주었지 와 나를 걸고 드느냐 말이다.

야무네 : 니도 삼수한테 곡식 말이나 얻어묵었싱께…….

⇒ 막달네와 야무네의 대화를 통해, 최 참판가의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나눠 주는 삼수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심한 흉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봉기는 삼수에게서 기민미를 풍족히 받은 상황에서, 막달네와 야무네는 '저놈', '삼수 놈'이라며 봉기와 삼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참고] 막달네의 '지 딸년을 삼수한테 내주었음 주었지'를 통해 봉기가 삼수에게서 기민미를 얻기 위해 딸을 미끼로 내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봉기는 곱상하게 생긴 딸을 마치 삼수에게 시집이라도 보낼 것처럼 굴며 삼수의 환심을 사려 한다. 또한 막달네는 봉기가 삼수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흉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야무네는 막달네 역시 삼수에게서 기민미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날 만하다고 대꾸하고 있다. 작품에는 실제 막달네가 삼수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되어 있다.

S#161. 논둑

윤보와 두만 아비.

윤보 : 이야기는 그기이 아이고, 딱 잡아서 말한다 칼 것 같으믄 자네겉이 굶지도 않는 집에는 기민 쌀을 줌시, 배가 고파 시적 숨넘어가는 집은 와 따돌리나 그 말이다.[→ 기민미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

두만 아비 : 나는 그 쌀로 죽 쑤어서 굶는 사람 나누어 묵었다.[→ 봉기와 달리 마을 민심에 신경 씀]

윤보 : 덕분에 인심 썼구만.[→ 은근 비아냥거리는 말투]

담뱃대를 꺼내 무는 윤보.

⇒ S#160에 이어서 기민미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최 참판가의 기민미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이나 반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준구는 흉년을 맞은 마을에 기민미를 분배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인심을 갈라놓으려 한다. 그런 상황에서 윤보는 최 참판가의 신세를 지며 살아왔던 두만 아비가 준구에 대적하지 않은 채 그가 주는 기민미를 받으며 실속을 챙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마을의 형편과는 무관하게 지내던 준구는 어느 날 밤 도끼를 든 무리가 고방 문을 부수었다는 소식에 놀란다.

S#163. 사랑 밖 (밤)

준구와 삼수. 바지를 추키며 나서는 준구.

준구 : [고방 문을 부순 현장으로] 가자.

삼수 : 소인은 못 가겄습니다.

준구 : 뭐?

삼수 : [고방 문을 부순 것은] 도적이 아니고 마을 놈들입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준구 : 그런데 왜 못 가!

삼수 : 마을 놈들이 잡아 죽일락 칼 깁니다. 기민 쌀 안 받은 놈들은 일을 소인이 꾸밌다고 생각하니께는. 소인이야 나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준구 : 마을 사정을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네놈이 이리저리한 건 사실 아니냐?

삼수 : 그, 그러니께 나리께선 모르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소인은 피해 있겄십니다.

냅다 달아나 버린다.

⇒ 마을 사람들이 최 참판가의 고방 문을 부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구와 삼수의 대화 장면이다. 삼수는 자신이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나눠 준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이므로 그들 앞에 나설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기민미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책임을 준구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준구는 실제 기민미를 나누어 주는 일은 삼수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기민미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눠졌는지 자신은 그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모른다며 역시 책임을 삼수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삼수는 고방이 부수어진 현장에 없는 자신을 핑계 삼아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대어 위기를 모면하라고 일러 주고는 달아난다.

(나) 박경리, 「토지」

*** 수록 지문 평가**

대하소설 「토지」 제1부의 일부분이다. 「토지」는 구한말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경남 하동 평사리 일대에서 만주, 그리고 다시 한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공간을 무대로 하여 최 참판가와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시 민중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장대한 작품이다. 지문은 (가)의 고방 문이 부수어진 상황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각 인물의 태도와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읽도록 한다.

*** 수록 지문 분석**

다른 하인 하나를 데리고 준구는 소동이 벌어진 고방 앞에 나타났다.

그곳[→ 최 참판가의 고방 앞]에 서희가 있었다. 봉순이는 초롱을 들고 서희 옆에 서 있었으며 웅기중기 모여 있는 마을 장정들은 용이, 영팔이, 한조, 달수였으며 그들을 거느리듯 윤보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부숴서 열어젖혀진 고방 안에서 길상과 수동이 곡식 섬을 끌어내고 있었다. 서희의 초롱초롱한 눈이 준구를 쏘아본다.[→ 준구에 대한 적대적 감정 표출]

"어찌 된 일이냐?"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좁은 균열 사이로부터 밀어내는 것처럼 다소 금속적인 준구의 목소리다. 고방 안에서 수동이 절룩거리며 준구 앞에 나타났다.

증오에 타는 서로의 눈이 부딪친다.[→ 준구와 수동의 상호 적대적 관계 표출]

"애기씨[→ 서희]의 분부시오."

"분부? 무슨 분부냐."

"애기씨께서 공평치 못하다는 말을 들으신 모양이오."

"공평치 못하다구? 뭐가 공평치 못했느냐?"

"애기씨께서는 마을에 곡식을 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구?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소인이 애기씨께 말씀드렸십니다."

가로지르듯 윤보가 몸을 내밀었다. 곰보 자국이 두드러지는 얼굴에 초롱불 빛이 번드르르 흐른다.

⇒ 서희와 서희의 시중을 드는 봉순이, 윤보와 마을 장정들, 서희를 따르는 최 참판가 하인 길상과 수동 등 고방 앞에서 소동을 벌인 인물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 준구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표출되면서 대립 양상을 보인다. 특히 준구의 물음에 대한 수동의 대답에서는, 최 참판가의 주인인 서희가 지시한 일이므로 고방에서 곡식을 꺼내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며 굳이 이 일에 준구의 허락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는 윤보가 자신은 최 참판가의 소작인이 아니라 목수이므로 혹시나 소작하는 땅을 빼앗길까 봐 준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처지임을 드러내며 기민미 분배와 관련된 준구의 처사를 거의 희롱조로 비난한다.

"듣기 싫다! 네놈하고는 얘기할 것 없다![→ 윤보에게 하는 말] 수동이 네 이놈! 한밤중에 도끼로 고방 문을 부쉈것다! 그러고 도적놈들을 불러들였으니 네 죄는 너도 잘 알렷다!"[→ 화살을 최 참판가의 하인인 수동에게로 돌리는 준구]

"아니옵니다. 낮에 애기씨께서 서울 아씨[→ 현재 최 참판가의 안채를 차지하고 있는, 준구의 아내]한테 가서 도장(= '곳간'의 방언) 열쇠를 쓰겠으니 가져오너라 이르시길래 가서 서울 아씨께 여쭈었습죠. 주시지 않았십니다. 애기씨께서는 매우 노하시서 도끼로 도장을 부시라 하싰습니다."

⇒ 준구의 아내인 '서울 아씨'가 최 참판가의 고방 열쇠를 관리하고 있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음이 드러나 있다. 참판가의 어른들이 죽고 어린 서희만 남은 상황에서 준구 일가가 참판가의 재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동은 현재의 상황이 고방 열쇠를 달라는 서희의 명을 거절한 '서울 아씨'의 탓도 있다며 조씨 일가를 비난하는 동시에 최 참판가의 주인인 서희의 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움 때문에 굳어진 얼굴로 수동이는 쏘아 댄다.

"도적놈들! 어린것[→ 서희]을 꾀어서 이따위 짓을 했것다? 무슨 말을 한들 도끼 들고 한밤중에 도장을 부수고 도적질하려던 죄는 못 면할 줄 알아라! 집안에서 다스릴 일도 아니고 관가에서 처리할 일인 줄 안다! 새는 날 두고 보자!"

⇒ 준구는, 서희가 '서울 아씨'에게 고방 열쇠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고방 문을 부수라 지시했다는 수동의 말에는 반박하지 못한 채, 고방을 부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내며 위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구가 현재 최 참판가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는 하지만, 그 역시 서희가 최 참판가의 정당한 주인이며 참판가의 재산을 처리할 권리가 서희에게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씩 웃으며 코를 풀고 나서 윤보는 다시,

"나리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나 숭년[→ 흉년]이믄 나라님께서도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에게 기미를 나누시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당주님[→ '당주(當主)'는 '지금의 주인'으로, 여기서는 참판가의 주인인 서희를 가리킨다.]이 주시겄다는 곡식 얻어 가는 기이 죄가 되겄십니까. 도리어 삼수 놈이 중도에서 곡식을 가리단죽(= 남의 것을 중간에서 빼앗아 가짐)했는지 주는 집 안 주는 집 있고 보믄 그 사단(事端,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을 캐어 보는 것도 재미있일 성싶구마요. 허기 든 눈까리에는 사람도 소개기로 뵈고 떡 덩어리로도 뵌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미] 안 캅니까. 머 그리 무섭을 기이 있겄십니까."

슬쩍 공갈을 때린다. 분하기도 하려니와 쇠고기, 떡 덩어리 어쩌구 하는 바람에 준구는 잡아먹히기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와들와들 떤다.

⇒ 준구의 위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조롱조로 말하는 윤보이다. 그는 준구에게 자신들은 당주인 서희가 곡식을 나눠 준다고 하여 참판가에 들어온 것이니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삼수가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분배한 일을 '캐어 보'라며 기민미를 나눠 준 배후에 준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담긴 말을 슬쩍 던진다. 그러고는 만약 준구가 기민 곡식 분배에 책임이 있다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도 있다는 은근한 위협까지 한다. 이러한 윤보의 말에 준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소인네야 아무 죄 없소. 죄 없구말구요. 백설 같십니다.[→ 흰 눈처럼 깨끗하다며 자신의 결백함 강조] 관가에 가도 아무 꿀릴 기이 없구마요. 소인이 팔도강산은 아니라도……."

윤보의 독무대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윤보가 거리낌 없는 태도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장광설은 이제부터 시작할 모양이다. 그러나 역시 아이는 아이였다.[→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 밤이 늦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서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졸음이 와서 서희는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길상아, 어서 해. 어서 하란 말이야."[→ 곡식 나눠 주는 일을 얼른 끝마치라는 말]

연신 손등으로 눈을 비벼 댄다.

"예, 애기씨! 길상아, 그리고 이 서방이랑 와서 거들어 주소!"

윤보 말하는 재미에 방심하고 있던 수동이는 외쳤다. 윤보는 여전히 준구를 상대하여 노닥거리려 했지만 밖으로 급히 날라 내는 곡식 섬을 넋 빠진 것처럼 바라보던 준구는,

"죽일 놈들! 날도둑놈! 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이니 어디 오늘 하룻밤 날뛰어 보아라!"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 있던, 데리고 온 하인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발길을 돌렸다.

⇒ 흉년으로 살기 어려워진 마을에 준구가 삼수를 앞세워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나눠 주고, 그로 인해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서희의 지시 아래 최 참판가의 하인들과 마을 장정들이 고방 문을 부수고 곡식을 꺼내 가다 준구와 대립하는 상황이다.

⇒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최 참판가의 재산을 노리던 준구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만 기민미를 나눠 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곧 참판가의 당주인 서희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지주로 군림하기 위한 계책이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8~31] 고전시가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수록 지문 평가**

작가가 벼슬길을 단념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지은 작품으로, 제목에서는 '십팔곡'이라 했지만 총 19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입신양명의 삶과 은자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조선 시대 사대부의 현실 인식과, 은자의 삶을 선택한 후 강호 자연에서 '한거(閑居)', 곧 한가롭게 지내며 느끼는 만족감과 유학자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 제1수 :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지난 세월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 평생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 충과 효]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 이 두 일을 아니 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 충효를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지난 십 년 동안 허둥대며 살았다는 것이다.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과거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것[→ '출']이 부모에게는 '효'를, 임금에게는 '충'을 실천하는 길이라 여겼다. 즉 화자가 지난 세월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 허둥댔다는 것은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모습이겠다.

 # 제3수 : 세상사를 잊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소망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 숲과 샘)이 좋으니라
→ [추구했던 바를] 비록 못 이루어도 [나는] 자연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스스로 한가하였으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 물고기와 새]를 좇으려 하노라
→ 조만간 세상일을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비록 공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무심 어조'처럼 강호 자연에 기거하며 한가로이 지내고 싶다는 것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출'에서 '처'로 변화했음이 드러난다.

 # 제4수 : 자연을 즐기는 삶과 충(忠)의 의무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 자연에서 놀려고 하니 [그것은] 임금을 저버리는 일이 되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 임금을 섬기자 하니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에 어긋나는구나.
⇒ '소락'은 화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강호에 놀'고 싶은 마음[→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다.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 홀로 갈림길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 '성주'를 섬기는 사대부로서 책무를 다하는 삶[→ '출']과 '소락'을 좇아 강호 자연을 즐기는 삶[→ '처'] 사이에서 화자는 갈등하고 있다.

 # 제8수 : 현명한 군자가 가야 할 길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임금에게는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는 혜택을 베풂) 처(處)하면 조월 경운(釣月耕雲)[→ 달에서 낚시질하고 구름을 밭 삼아 농사짓는다는 말로, 자연에 은거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삶을 뜻한다.]
→ [벼슬길에] 나아가면 임금을 섬겨 백성에게 은덕을 미치게 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거하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네.
명철 군자(明哲君子)는 이[→ 치군택민과 조월 경운]를 즐기나니
→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 세상에 나아가서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로부터 선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당대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가치관[→ 유교적 출처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 하물며 부귀는 위태한 것이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라.
⇒ 벼슬을 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자칫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신은 자연에 묻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속세에서의 삶보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긍정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 제17수 : 성현의 도(道)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따르는 삶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 성현이 가신 길은 예부터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은거하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 은거하거나 출사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오.
⇒ '은'[→ 거]은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을, '현'[→ 출]은 세상에 나아가 관직에 오르는 삶을 가리킨다. 성현의 '도'는 하나이니, 은거하든 출사하든 성현의 '도'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도(一道)요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 하나의 도(道)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 곳인들 어떠하리.
⇒ <제8수>에서 '빈천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관직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출'과 '처'를 하나라 인식한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는 '처'의 삶을 살며 성현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한다. 이는 '출'과 '처' 사이에서의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